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 등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폐지(현행 제9조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나. 신설된 ‘녹색물류전문위원회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3조의2)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현 물류 부문 ‘녹색물류협의기구’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폐지하되, 종전과 같은 기능은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구를 현행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 두는 방식으로 통·폐합

다. 신설 전문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4조)

라. ‘녹색물류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제도 폐지(현행 제48조의2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마.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51조)

중전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녹색물류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조문순에 따라 각 호 번호 재부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과위원회”를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심의·조정, 연구
· 개발 및 홍보·교육 계획의 심의·조정 등

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언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

스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②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녹색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나.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의 협회·전문기관·단체 또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 본문 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법 제37조의2제2항”을 “제37조의2제2항”으로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녹색물류전문위원회의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녹색물류
협약기구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제10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7조제1항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
을 위한 정책 제언·심의·조정,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 계획의 심의·조정 등

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

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②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녹색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나.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의 협회·전문기관·단체 또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

	<u>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u> <u>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u> <u>1명</u> <u>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u> <u>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u> <u>부한 사람</u> <u>4.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u> <u>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u> <u>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u> <u>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u> <u>은 기간으로 한다.</u> <u>5.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u> <u>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u> <u>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u> <u>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u> <u>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u> <u>정한 사항 외에 각 전문위원</u> <u>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u> <u>전문위원회의 위원 전체의 의</u> <u>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u> <u>③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u> <u>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u> <u>용한다.</u>
제14조(수당 등) <u>위원회 또는 분</u> <u>과위원회에</u>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제14조(수당 등) <u>위원회, 분과위원</u> <u>회 및 전문위원회</u> ----- -----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
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0조
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
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
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협회
· 전문기관·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천하는 사
람

-----.

-----.

<삭 제>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④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
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
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⑦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⑧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물류협의회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3(녹색물류협의회기구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

<삭 제>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1. <u>법 제37조의2제2항에</u>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 5. (생략) 6. <u>법 제60조의2에</u> 따른 <u>녹색물류협의기구의 운영</u> ④·⑤ (생략)	----- ----- ----- ----- -----. 1. <u>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u> 따른 <u>녹색물류전문위원회의 운영</u> 2. <u>제37조의2제2항</u>----- --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u><삭 제></u>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996